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

의안 번호	305
----------	-----

제출년월일 : 1993. 12.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 안 이 유

- 지방화 시대의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소방교육을 실시하여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전문지식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능력을 배양하여,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므로써 민생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대전직할시 비간부 소방공무원의 교육수요 충족과 소방교육업무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권소방학교설치, 운영행정협의회 구성

가. 행정협의회 주기능

- 충청권 비간부직 소방공무원 교육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충남소방학교 위탁교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
- 기타 소방학교 교육업무처리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나. 협의회 위원

-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대전직할시장
- 회 장 : 소방학교 소재지 자치단체장 → 충청남도지사

다. 실무협의회 위원

- 충북, 충남, 대전소방본부장, 충남소방학교장

3. 근 거 법 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칙 (내무부령 제473호)

- 붙임 1. 충청권소방학교설치, 운영규약(안)
2. 기타 참고자료 (관련법규 발췌)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대전직할시와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비간부직 소방공무원의 교육수요 충족과 소방교육 관련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명칭) 충청권소방학교의 명칭은 충청남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청에 둔다.

제4조 (구성) 협의회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직할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로 구성한다.

제5조 (조직) ① 협의회의 위원은 대전직할시장,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남도지사라고 하고 회장은 소방학교 소재지의 자치단체장인 충청남도지사라고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당해 시, 도 소속 공무원중 지정을 받은 자(부시장, 부지사를 원칙으로 한다)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가진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소방학교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충청권 비간부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사항
4. 기타 소방학교 교육업무처리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등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되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협의회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회의는 위원 전원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은 협의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개시 14일전까지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회장은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 ⑦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5조에서 정하는 실무협의회에 사전 또는 사후 협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참석) ①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협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대전직할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의 실, 국장 및 과장이 배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처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3인을 둔다.

② 간사는 충청남도 소방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회 구성 시, 도의 소방행정계장으로 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조정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내무부장관이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구성 시, 도 소방본부장 및 충청남도소방학교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정안건에 따라 관계 과장이 배석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소방본부장으로 하되 간사 및 서기는 제9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회의는 협의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실무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도 또한 같다.

⑤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소집 요구를 받은 때 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 위원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개최하는 시, 도에서 부담하는

·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17조 (규약의 개정) 이 규약은 협의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 (보칙)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전 직 할 시 장

충 청 북 도 지 사

충 청 남 도 지 사